

# 2023년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25.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임형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3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08건(안건번호 제2023-176827호~17843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76827호~176842호(순번 1번~16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76843호~176845호(17번~19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76846호~176851호(순번 20번~25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76852호~176858호(순번 26번~31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76859호~178434호(순번 32번~1608번) 불법복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2,81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3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42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855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1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PDF 파일이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문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안 총 28건임. PDF 파일은 문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을 매개로 하여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불법복제물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달행위가 이메일이나 채팅 등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저작물을 여러 명에게 반복하여 전달할 경우 이를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공중에의 전송’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라고 판단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6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6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 내지 1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5건임. 직접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 ■', '♣♣♣' 등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들은 대부분 2022년 내지 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 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우려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7번 내지 19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한 번에 바로 불법 해외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단계의 게시물을 시정권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 김선화 선임: 맞는 말씀임.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의 URL을 업데이트하여 제공중인 중간단계의 게시물들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블로그이거나 자체 사이트임. 그리고 순번 18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 사이트인 '■■■■■■■■■■.■■■■'에서 제공중인 콘텐츠와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블로그의 콘텐츠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가 본인이 운영중인 사이트로 경로를 제공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팝업 광고 등 광고 수익 등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순번 18번의 중간단계 사이트 '■■■■■■■■■■.■■■■'는 다른 게시물들을 봤을 때 콘텐츠를 대량 긁어와서 제공중인 것으로 보임. 긁어온 것도 문제지만 콘텐츠 자체도 불법성이 있는 콘텐츠들로 보임. 대상이 된다면 해당 사이트도 조사해보면 좋겠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경로를 제공중인 ♥♥♥ 게시물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 내지 19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번 내지 2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5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동일 게시자의 '㉹㉹㉹' 블로그에 일본 만화 '★★★', '○○○ ○○○ ○○○○○' 등의 불법 번역본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직접링크를 통해 각 원천게시물로 이동하여 만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는데 모두 현재 국내에서 정식 발간되어 연재중인 만화의 미발매 최신화로 확인되고, 원천게시물은 모두 '◇◇◇◇'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사이트는 2022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0번 내지 25번,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중인 ▲▲▲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인데, 앞서 심의한 안건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 김선화 선임: 해당 안건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링크 클릭 시 특정 회차의 만화를 게시한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게시물로 연결이 되어 곧바로 불법복제물을 감상할 수 있음. 앞서 심의한 안건은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URL를 변경하는데 그런 최신 대체 사이트를 알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링크 클릭 시 메인 페이지로 연결되고, 중간 단계를 거쳐 경로를 제공중인 안건을 포함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앞서 심의한 안건과 마찬가지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로, 가결하는데 특별히 의견 없으실 것으로 생각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0번 내지 25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번 내지 3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와 웹소설 불법복제물 총 6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와 웹소설은 모두 국내 합법 시장에서 유료로 유통중인 저작물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6번 내지 31번,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 내지 31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번 내지 160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2,81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닌자터틀: 뮤턴트 대소동'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9번은 영화 '닌자터틀: 뮤턴트 대소동'로, 2023. 9. 14.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임.  
(드라마 '유괴의 날'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75번은 드라마 '유괴의 날'임. 2023. 9. 13. ENA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의 최신 2개 회차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사안임.  
(드라마 '너의 시간 속으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50번

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너의 시간 속으로'임. 2023. 9. 8. 넷플릭스 독점 공개 드라마의 12부작 전체 분량을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32번부터 1608번까지 총 2,810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2번 내지 160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76827호~178434호(순번 1번~1608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16.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임형주

위원 홍승기